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5 . . . (제 회)	

방 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
제출 연월일	25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라디오·데이터·VOD 유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473호, 2024. 10. 22)됨에 따라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자본금 요건 적용 기준, 등록 취소, 장애인 시청 지원, 연간 전체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 편성비율 적용, 재산상황 공표, 고유식별번호 처리 등 방송법 상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항에 신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유형 정의 수정(안 제1조의2)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존 등록 방법 외 신고를 통한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정의에 ‘신고’를 추가하여 정의를 명확히 함

나.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 절차 추가(안 제8조)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등록 대신 신고를 하도록 변경함에 따라(방송법 제9조) 기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절차 규정에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

려는 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수리 절차를 추가함

다. 여러 개 채널을 겸영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자본금 적용 기준
세분화(안 제13조의3)

동일인이 여러 개의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신고 요건의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도록 자본금 적용 기준을 방송
사업유형별로 세분화

라. 기존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상 조문에 신고 추가

(안 제17조, 제52조, 제57조, 제66조의3, 제66조의6)

등록 취소, 장애인 시청 지원, 연간 전체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 편성비율 적용, 재산상황 공표, 고유식별번호 처리
등 방송법 상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 신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함

마. 그 외 단순 조문 정비(안 제4조)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각 호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같은조 제9
항에서 각 호 번호를 인용하고 있는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제9항의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부분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없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등록을”을 각각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한다.

제4조제9항 중 “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제6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및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을 “본문 및 각호”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을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으로, “등록신청서”를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신청서”를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로, “등록증”을 “등록증 또는 신고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을 “등록 또는 신고”로 한다.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단, 법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의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7.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단, 법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의 경우, 법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을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신고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9조의2제2항”을 “법 제9조의2제3항”으로,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은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은 15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은 3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등록신청”을 “등록신청 또는 신고”로 한다.

1. 법 제9조5항제1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텔레비전방송사업: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2. 법 제9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라 신고하려는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15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3. 법 제9조제5항제2호나목에 따라 신고하려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3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4. 법 제9조제5항제2호다목에 따라 신고하려는 방송채널사용사업: 각각의 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을”을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승인·등록이”를

“허가·승인·등록·신고수리가”로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등록을”을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한다.

제57조제5항 중 “등록한”을 “등록 또는 신고한”으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제1호 중 “등록한”을 “등록 또는 신고한”으로 한다.

제66조의6제1항 제4호 중 “등록”을 “등록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변경등록”을 “변경등록·변경신고”로 한다.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나목 중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을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허가·등록”을 “허가·등록·신고수리”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방송사업자(신고·등록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신고·등록 대상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제외)	신고·등록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및 신고·등록 대상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별표 1의2 제2호나목 중 “허가 또는 승인을”을 “허가·승인·신고수리를”로 하고, 같은 란 나목의 처분기준의 신고·등록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및 신고·등록 대상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란 중 “등록”을 “등록 또는 신고수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허가 또는 승인을”을 “허가·승인·신고수리를”로 하고, 같은 란 다목의 처분기준의 신고·등록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및 신고·등록 대상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란 중 “등록”을 “등록 또는 신고수리”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처분기준의 신고·등록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및 신고·등록 대상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란 중 “등록”을 “등록 또는 신고수리”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아.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1)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법 제18조제1항제1호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	업무정지 3개월

경우 2) 법 15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한 경우		개월	업무정지 3개월
--------------------------------------	--	----	----------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 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 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 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 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	------------------	---	----------------------------------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5 I 제2호의 라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 2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 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1)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5조 의2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 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법 제19조 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	---------------	---------	---------

경우 2) 법 15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한 경우			3,000만원
마.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 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제1조의2(용어의 정의) -----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같다.	같다.	---		
1. ~ 5. (생 략)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6.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6. -----		
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	-----		
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	-----		
여 <u>등록</u> 을 하거나 승인을 얻	여 <u>등록</u> 을 하거나 승인을 얻	-- <u>등록 또는 신고</u> 를 -----		
은 자를 말한다.	은 자를 말한다.	-----.		
7.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	7.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	7. -----		
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라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라디	-----		
오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	오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	-----		
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	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	-----		
5항의 규정에 의하여 <u>등록</u> 을	5항의 규정에 의하여 <u>등록</u> 을	----- <u>등록 또</u>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	<u>는 신고</u> 를 -----		
한다.	한다.	--.		
8.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8.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8. -----		
라 함은 데이터방송을 행하는	라 함은 데이터방송을 행하는	-----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데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데이	-----		
터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	터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	-----		

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u>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u>	----- ----- <u>등록 또는 신고를</u> ----- --.
9. ~ 11. (생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삭제	
⑨ <u>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3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u>	⑨ <u>제6항</u> ----- ----- ----- ----- -----.
제8조(<u>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u>)	제8조(<u>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u>
① 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u>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및 신고</u>) ①--- <u>본문 및 각호</u> ----- ---- <u>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u> ----- ----- <u>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u>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주된 사무소의 소재지</u>	6. <u>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단, 법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의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u>

7.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은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은 15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

7.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단, 법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의 경우, 법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②-----
-----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

----- 등록증 또는 신고증-----.

③----- 등록 또는 신고-----

-----.

제13조의3(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신고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 ① 법 제9조의2제3항-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업별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은 3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을 적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1. 법 제9조5항제1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텔레비전방송사업: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2. 법 제9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라 신고하려는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15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3. 법 제9조제5항제2호나목에 따라 신고하려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3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4. 법 제9조제5항제2호다목에 따라 신고하려는 방송채널사용사업: 각각의 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의 단위가 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의 각각의 방송분야를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2. 3. (생략)

제17조(허가·승인·등록·신고수리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2. (생략)

③ (생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

② -----

-----.

1. ----- 등록신청
또는 신고-----

-----.

2. 3. (현행과 같음)

제17조(허가·승인·등록·신고수리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등록 또는 신고
수리를 -----
-----.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5항에 따라 허가·승인·등록이 취소된 사업자 또는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 방송을 계속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 3. (생략)

⑤·⑥ (생략)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① (생략)

②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4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4. (생략)

③ (생략)

----- 허가·승인·등록
· 신고수리가 -----

1. ~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 등록
또는 신고를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편성) ① ~ ④ (생략)

⑤ 방송사업자(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한다.

⑥ ~ ⑧ (생략)

제66조의3(재산상황의 공표) ①
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 (생략)

② · ③ (생략)

제66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편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66조의3(재산상황의 공표) ① -

1. -----
 등록 또는 신고한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제6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의 <u>등록</u>에 관한 사무 5. ~ 9. (생략) 10.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 및 전광판방송사업의 변경허가·변경승인 또는 <u>변경등록</u>에 관한 사무 11. ~ 14. (생략) ② ~ ④ (생략)	①-----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등록 또는 신고</u>----- -- 5. ~ 9. (현행과 같음) 10. ----- ----- ----- ----- ----- <u>변경등록·변경신고</u>----- -- 11.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 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정지기간을 합산하되,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업무정지 기간동안 위법사실의 개선이 없는 때에는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등록·신고수리의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방송사업자(신고·등록 대상인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신고·등록 대상인

		송채널사용사업자 는 제외) · 중계유 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 어 방송 사업자 (신고 · 등록 대상 인 인터넷 멀티미 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는 제외)	· 음악유선방송사업 자 · 전광판방송사업 자 · 전송망사업자 및 신고 · 등록 대상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법 제18조제 1항제2호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 · 승인 유효기간 단축 6 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법 제9조에 따라 허가 · 승인 · 신 고수리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2 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 1항제5호	허가 · 승인 취소	등록 또는 신고수리 의 취소
다.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에 따라 허가 · 승인 · 신 고수리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 1항제1호	허가 · 승인의 취 소	등록 또는 신고수리 의 취소
라.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 리를 받은 경우	법 제18조제 2항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마. 삭제 <2022. 6. 28.>			
바. 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 당하게 된 경우	법 제18조제 1항제3호	허가 · 승인 취소	등록 또는 신고수리 의 취소
사.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제 1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 · 승인 유효기간 단축 6	업무정지 6개월

		개 월	
아.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1)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자.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차.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카. 법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1호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업무정지 6개월

		유효기간 단축 6 개월	
타.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약관변경 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 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 1항제7호	업무정지 2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2 개월	업무정지 2개월
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 8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방송 통신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법 제18조제 1항제13호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 개월	
하. 법 제91조의7제1항에 따른 방송 의 유지·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 은 경우	법 제18조제 1항제8호의2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 개월	업무정지 3개월
거.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 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 개월	업무정지 3개월
너.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 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 개월	업무정지 3개월
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 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 1항제10호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 개월	업무정지 3개월
러. 방송사업자가 내부·외부의 부당 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 성한 경우	법 제18조제 1항제12호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 개월	업무정지 6개월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0조 관련)

I. 법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10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10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전송망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7,000만원	5,000만원
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 수리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 제2항	1,000만원	
다.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재산	법 제19조	7,000만원	5,000만원

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경우	제1항		
라.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변경을 하여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마.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 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	7,000만원	5,000만원
사. 법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또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법 제100조제1항	3,000만원	2,000만원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 (아목 및 자목의 경우는 제외 한다)			
아.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 한 법 제33조에 따른 심의규 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 제100 조제3항	5,000만원	3,000만원
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복 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방 송출연 등으로 인하여 법 제 33조에 따른 심의규정을 위반 하는 경우	법 제100 조제3항	5,000만원	3,000만원
차. 법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 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100 조제1항	3,000만원	2,000만원
카.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약관 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	3,000만원	2,000만원
타. 법 제91조의7제1항에 따른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을 이 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파.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 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하.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과학	법 제19조	5,000만원	3,000만원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설개 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		
거. 법 제100조제1항제2호·제 3호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 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너. 법 제100조제1항제2호·제 3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3회 이상 동 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0 조제3항제 3호	5,000만원	3,000만원
더. 방송사업자가 내부·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7,000만원	5,000만원

II.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시정조치가 병과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과징금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과징금 금액을 부과한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가. 금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 은 경우	법 제76조의3제4항 및 이 영 제60조의4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5

나. 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1호 법 제76조의3제4항 및 이 영 제60조의4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4
	제1항제2호	
다. 그 밖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3호 법 제76조의3제4항 및 이 영 제60조의4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제1항제3호	

III.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의 산정 절차 및 기준

가.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을 거쳐 산정한다.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사유

1) 기준금액 산정

가) 기준금액은 방송사업자등이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그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이하 “관련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은 마)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2% 초과 1.8%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6% 초과 1.2% 이하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	0.6% 이하

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위반행위를 한 기간: 위반행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이나 피해의 지속 여부, 위반행위의 연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관련서비스의 범위: 법 제2조의 방송 및 방송사업의 분류, 서비스의 중

류와 성질, 서비스의 제공 방식·지역, 서비스의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매출액: 법 제85조의2제4항 및 제9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고,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	2억원 이하

마) 나) 및 라)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방송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 미친 영향

(2) 이용자의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를 한 방송사업자등이 이용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도

2) 필수적 조정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합산한 금액이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3) 추가적 조정

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액·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의 변화 등 위반행위가 방송시장 및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세부기준

기준금액 산정,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사유 및 가중·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6532